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호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50억 이상의 공사,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그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대전광역시장은 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 예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 이상의 공사
3.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4. 그 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예고는 입법예고로

같음하고, 「행정절차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예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예고방법)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